

등록금심의위원회 내규

2012. 2. 10. 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6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회는 교직원, 학생, 관련 전문가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,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.

③제2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,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, 학생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인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⑤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학생을 대표하는 위원이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의 경우 총학생회의 임기로 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 3 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등록금 산정에 관한 사항
2. 기타 위원회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4 조 (운영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
②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, 총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 요지,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·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2.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3.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정한 사항

제 5 조 (상위법) 본 내규의 상위법이 개정될 경우 그에 따른다.

제 6 조 (기타 세부사항) 기타 위원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12. 2. 10. 제정)

이 내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